

『민·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』 투자기업 참여혜택 안내

- 2012. 3.27(화)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

1 투자기업 부담금의 세제 혜택

□ 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자금 출연시 세제 혜택 지원

< 법인세 산출 기준 >

- 소득금액(수입-비용^①) × 세율(과세표준, Taxbase*에 따른 차등 적용) = 산출세액^②

*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% 적용,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% 적용

① 「법인세법」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인정

- 기획재정부령이 정하고, “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
- *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 출연금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되어야 함

⇒ 출연금 전액은 “지정기부금”으로 인정, 손금(산입한도액 이내)으로 처리되어 비용에서 제외 처리 → 총 소득금액(TaxBase) 감소 효과

②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의3에 따른 세액 공제

-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연구, 인력개발,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
-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
- * 법인세 공제액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에서도 공제

⇒ 최종 산출세액에서 출연금 7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

□ 평가개요

○ (공공기관)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(동반성장추진위)

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평가점수를 0.5점으로 환산 반영

- 평가대상 : 59개 공공기관

* 공기업 24개, 준정부기관 : 26개, 기타공공기관 9개

- 평가반영 : 최대 10점(100점 만점 기준, 경영평가점수 환산시 최대 0.05점)

* 평가지표 : 선택지표 항목中 [8].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

○ (대기업)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실적평가(공정추진위)

- 평가대상 :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 기업

- 평가반영 : 최대 6점(100점 만점 기준)

* 평가지표 : 협약내용의 충실도 항목中 지원내용의 규모·정도

□ 민·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관련 평가지표

구분	공공기관	대 기업
관련근거	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기준 - [8]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확대	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·지원 등에 관한 기준 ○ 제7조-1.금융(자금)지원-가.직접지원 ○ 제7조-3.기술(개발)지원 및 기술보호
평가항목	○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확대	○ 협약내용의 충실도 항목
평가기준	○ 민·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과제 건수(건당 1점) < ※ 예시 : 민·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선정과제 10개면 10점 반영	① 금융(자금)지원 규모 관련 ① 직접지원 - 지원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.15%이상(무상제공시 0.075%) : 2점 - 지원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.075%이상(무상제공시 0.0375%) : 1점이상~2점미만 - 지원규모가 전년 매출액의 0.075%미만(무상제공시 0.0375%) : 1점 미만 ④ 기술(개발)지원 및 보호관련(협약서 이행정도) - 80%이상 : 3.2 ~ 4.0점 - 60%이상 : 2.4 ~ 3.2점미만 - 40%이상 : 1.6 ~ 2.4점미만
반영점수 (100점만점)	최대 10점	최대 6점

□ 성과공유제 개요

- 원가절감을 포함하여 수·위탁 기업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**협력 활동시 발생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***임
 - * 성과공유제 충족요건: ①협력활동의 목표합의 ②사전계약체결 ③성과공유
 - * 관련근거: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(상생협력성과의 공평한 배분)
- 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확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“위기관리대책회의(’12. 3.14)”에서 **‘성과공유제 확산 방안’** 마련
 - * 대기업·공공기관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시스템 정비 및 인센티브 마련 (세부내용 “붙임” 참조)

□ 민·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관련 성과공유제 절차

- 성과공유제 확인 및 인정 절차(“성과공유 확인제” 적용)
 - (사전계약)투자기업의 “구매협약 동의서” 및 중소기업의 과제 수행 협약하는 “표준계약서”로 사전계약 인정
 - (성과인정)과제 완료 후 “성과공유 확인서” 발급
 - *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內 『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』를 통해 확인

□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
- (공통사항) 우수 기업 정부포상 확대, 지경부 R&D 가점, 관련 제품 정부조달 입찰시 가점, 동반무역촉진단 연계 지원
- (대기업) 동반성장지수 대상 기업 가점 부여
- (공공기관) 동반성장 평가시 가점 부여, 관련제품 수의계약 구매 가능
 - * 관련근거: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